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제정 1972. 3. 30

3차 개정 1998. 5. 29 규칙 제1031호

4차 개정 2003. 3. 17 규칙 제1102호

5차 개정 2008. 5. 27 규칙 제1198호

6차 개정 2015. 6. 12 규칙 제1383호

7차 개정 2016. 7. 19 규칙 제14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 (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7)

제2조(연수대상) 연수대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와 같다.(개정 2008.5.27., 2016.7.19.)

제3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① 연수의 종류는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하고, 그 세부 내용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과 같다.(개정 2008.5.27.)

②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의 과정과 내용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및 제3항과 같다.(개정 2016.7.19.)

③ 연수과정에 따른 학급은 각각 별도로 편성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원장·강사·사무직원) 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7.19.)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연수 과정별 강사는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5.27., 2016.7.19.)

④ 연수원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제5조(연수원 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에 연수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과 원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및 연수에 관계되는 인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6.7.19.)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7.19.)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19.)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7.19.)

1.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 4. 연수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연수 운영

- 제7조(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①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7.19.)
- ② 직무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7.19.)
- ③ <삭제>(개정 2016.7.19.)

제8조 <삭제>(개정 2016.7.19.)

제9조(학급편제) 연수원의 각 과정 학급당 연수인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으며 특강 및 공통과목은 합반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연수시기)** ① 연수원의 연수기간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7.19.)
- ② 자격연수는 하계 및 동계방학에, 직무연수는 적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7.19.)

제10조의2(연수경비 부담) ①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연수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수생 또는 소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2.>

- 제10조의3(연수비 반환)** 연수비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9.)
1. 연수 개시일 3일 전까지 연수를 취소한 경우 : 연수생이 연수 취소신청서 및 연수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한 연수비 전액을 반환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연수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삭제>(개정 2016.7.19.)

제11조 <삭제>(개정 2016.7.19.)

제12조 <삭제>(개정 2016.7.19.)

제13조(등록) 연수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7.19.)

- 제14조(연수시간)** ① 1일 연수시간은 6시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5.27)
-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개정 2016.7.19.)

제16조(이수증) 원장은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개정 2008.5.27., 2016.7.19.)

제17조(평가) ① 원장은 연수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7.19.)
② 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해당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7.19.)

제18조(수료기준)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수성적의 수료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7.19.)
②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여도 총 이수 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지 아니하면 수료할 수 없다.(개정 2016.7.19.)

제4장 상벌

제19조(표창) 연수자 중 품행이 방정하고 연수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 대하여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7.19.)

제20조(퇴소처분) 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소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2016.7.19.)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하였을 때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하였을 때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5. 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7.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제21조(재교육 금지) 제2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퇴소처분 받은 사람에게서는 향후 2년간 우리 연수원의 연수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7.19.)

부 칙

1. 이 규정은 197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연수원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7. 개정 제1198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초등교육연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연수원”을, “초등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수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6. 12. 개정 제13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9. 개정 제14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료 기준 적용례) 제18조제2항은 공포일 현재 시행 중인 연수부터 적용한다.